

공공·민간재개발사업(3개소)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정비계획 등 수립 중인 방학동 641·638일대 민간재개발사업 및 창동 470일대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16일

도 봉 구 청 장

1. 제한지역

연번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1	방학2동 641 일원	72,282.6	가칭)방학동 641일대 민간재개발사업
2	방학2동 638 일원	39,270.5	가칭)방학동 638일대 민간재개발사업
3	창3동 470 일원	135,145	가칭)창동 470일대 공공재개발사업

2. 제한사유

- 가.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
- 나.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공공·민간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

3. 제한대상 행위

가. 건축물의 건축

- 1)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
 - 2)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 - 3)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(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)
 - 4)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 - 5)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분할 등
 - 6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 - 7)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- ※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은 적용 제외

나. 토지분할

4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

(단,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)

5. 지형도면 : 붙임(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,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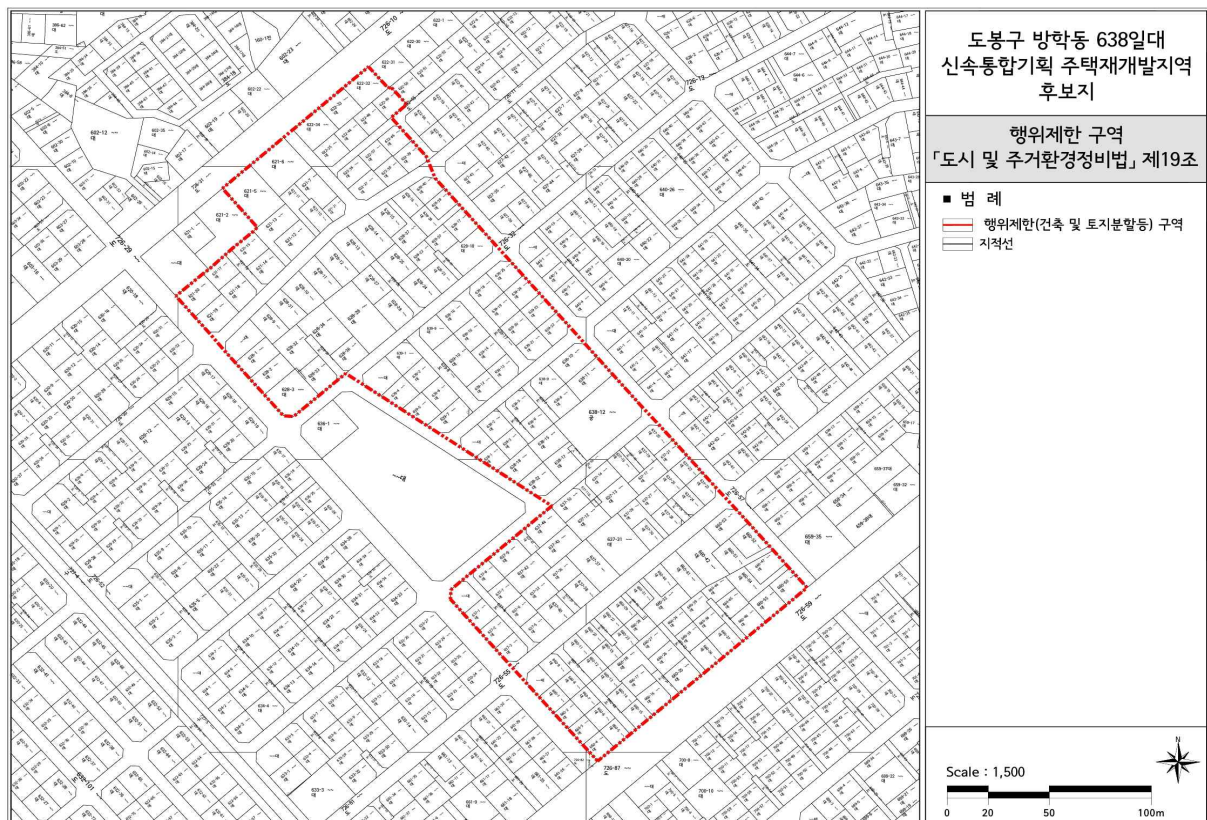
6. 기타사항 :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(02-2091-34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「붙임」 행위제한 지형도면

○ 방학2동 641 일원 [가칭]방학동 641일대 민간재개발사업



○ 방학2동 638 일원 [가칭]방학동 638일대 민간재개발사업



○ 창3동 470 일원 [가칭)창동 470일대 공공재개발사업]

